

장애인거주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추진

-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후속조치 대책 마련 -
- 입소 장애인 사생활 보호 및 맞춤형 개별서비스 강화 -
- 돌봄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 확충 -
-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학대 보도권고기준 마련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한 「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」을 발표하였다.

이번 대책은 지난해 울산지역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.

이를 위해 올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입소 장애인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2025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하였고, 전국 107개소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해 시설 현황, 학대 예방활동 실적,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인권상황 점검을 실시하였다.

이번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, 관계부처 및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‘입소 장애인 사생활 보호 및 개별서비스 강화, 돌봄인력 처우개선 및 장애인 인식개선 강화’라는 목표로 「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」을 마련하였다.

[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]

① 시설현황

전체 107개소 중 시설유형으로 구분하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*이 55개소(51.4%)로 가장 많았고, 시설소재는 경기 25개소(23.4%), 시설규모는 50인~100인 미만 시설이 85개소(79.4%), 설치시기는 2000년 이전에 설치한 노후 시설이 87개소(81.3%)로 가장 많았다. 입소 장애인 생활공간 다인실(3인실 이상)이 있는 시설은 103개소(96.3%, 1,316개)이며, 대부분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·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.

*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 등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·일상생활 지원·지역사회생활지원·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② 입소 장애인 현황

입소 장애인 전체 7,070명 중 남성이 4,183명(59.2%)이며, 입소 장애인 전체 평균 연령은 44.1세이다. 장애유형으로 구분하면 지적장애인 5,508명(77.9%)이 가장 많았으며,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인 6,826명(96.5%)이 가장 많았다. 장애인거주시설 입소기간은 평균 24.3년이며, 대부분 상시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③ 종사자 현황

장애인거주시설의 전체 종사자 5,143명 중 여성 종사자가 3,122명(60.7%), 직종은 돌봄 인력인 생활지도원 3,699명(71.9%)으로 가장 많았고, 평균 연령은 45.3세이다. 종사자가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8.5년으로 나타났다.

④ 학대 예방활동 현황

최근 3년간(2022년~2024년) 인권교육 실적의 경우 입소 장애인은 연평균 3.6회(6시간), 종사자는 연평균 4.3회(13.2시간)으로 대부분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, 일부 교육 미이수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 (입소 장애인 인권교육) <기준> 연 1회(4시간) → <실적> 연 3.6회(6시간)

** (종사자 인권교육) <기준> 연 2회(8시간) → <실적> 연 4.3회(13.2시간)

*** (인권교육 미이수 사유) 입소 장애인의 경우 병원 입원, 퇴소, 원가정 복귀, 근로, 등교 등, 종사자의 경우 출산, 육아휴직, 병가, 퇴사 등

인권지킴이단 구성은 평균 6.3명이며, 5인~7인으로 구성된 시설이 91개소(85.1%)로 가장 많았고, 인권지킴이단 운영은 정기회의 평균 3.9회, 임시회의 평균 0.13회 운영 등 인권지킴이단 구성·운영 기준은 대부분 충족하였으나, 인권상황 점검 및 지자체 2주 이내 적기 보고율은 61.1%로 나타났다.

* (인권지킴이단 구성·운영 기준) 거주시설 내부 및 외부단원 5~11인 구성, 정기회의 연 4회(분기별 1회) 및 임시회의(필요시)

** (인권지킴이단 역할) 거주시설 인권 모니터링, 인권침해 의심 사례 발생 시 신고·진정·고발 등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인권보호

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면담

전체 1,354명 면담자는 총 13개로 구성된 점검항목에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나, 일부 점검항목에서 부정적 응답이 나왔다. 일부 인권침해 의심사례의 경우 인권지킴이단 보고·검토를 거쳐 장애인권익옹호기관, 수사기관 등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.

* (부정적 응답 항목) 지역사회 생활지원, 전화사용, 금전 사용 및 관리

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별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[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]

① 사전예방 강화

돌봄인력과 입소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인권교육과 대면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, 입소 장애인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계획이다.

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변호사, 공공후견인,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지킴이단 외부 단원 직종 다양화 및 비중을 높이고, 정기 회의 및 인권상황 점검 등 각종 보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.

입소 장애인 사생활보호 및 인권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거실·복도·식당·출입구 등 공용공간 위주로 CCTV 설치·운영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.

② 입소 장애인 인권강화

대규모 거주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사회 아파트·빌라 등 공동주택을 활용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·운영할 계획이다.

입소 장애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존 대규모 거주시설 중 3인실 이상 다인실 생활공간을 1~2인실로 전환하는 생활관 환경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
입소 장애인 개별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거주시설 내 대규모 집단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교육·문화 등 개인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개별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, 무연고 입소 발달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홍보 강화 등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.

아울러,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새 단장(리모델링), 간호사 및 돌봄인력 확충, 의료장비 지원 등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③ 돌봄인력 지원강화

업무 강도가 높은 거주시설 돌봄인력의 인건비를 인상하는 등 돌봄인력 처우를 개선한다. 24시간 365일 거주시설 운영과 입소 장애인 고령화·중증화

등에 따른 돌봄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장애인거주시설 설치·운영 인력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.

④ 학대 사후대응 및 지원강화

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피해 확인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학대예방 교육·홍보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충, 지역기관 추가 설치 등을 통해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. 또한 피해장애인(아동) 쉼터 기능보강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학대피해 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아울러,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로 행정처분 받은 거주시설에 대해 위반사실 명단 공표를 강화하는 한편, 시설 퇴소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자립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.

⑤ 인권강화 지원체계 및 사회인식 개선

‘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’ (6.22.) 지정 및 집중홍보·행사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인다. 장애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‘장애인학대 보도 권고 기준’도 마련할 계획이다.

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.

앞으로 보건복지부는 「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권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.

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“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(요약)
 2.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(총괄표, 요약)
 3. 장애인학대 보도권고 기준(요약)
- <별첨> 1.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결과(전체, 인포그래픽)
 2.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을 위한 권고기준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<총괄> |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춘희 (044-202-331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왕석 (044-202-3309) |
| <학대대응, 권익옹호> |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| 책임자 | 팀 장 | 박광훈 (044-202-3315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안영도 (044-202-3301) |
| <자립지원> |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성재경 (044-202-3280) |
| | | 담당자 | 서기관 | 정순애 (044-202-3181) |
| <발달장애인 공공후견> |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고운 (044-202-334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나민정 (044-202-3347) |

<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개요 >

- (조사기간) '25. 3. ~ 6월(현장조사 4.7. ~ 5. 30.)
- (조사대상) 107개소(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)
- (조사범위) 최근 3년간('22 ~ '25. 현재)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반
- (조사내용) 시설현황, 인권예방활동,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면담 등
- (조사방식) 복지부 및 지자체 합동조사(조사원 3인 1조 구성)

- ① (시설현황) 전체 107개소 중 2000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시설 다수(87개소), 다인실 생활공간 등 집단시설(1,316개), 중소도시 다수 소재(74개소)
 - (입소 장애인 현황) 전체 7,070명 중 남성 입소 장애인 다수(4,183명), 평균 연령은 44.1세, 지적 장애인(5,508명) 및 심한 장애인(6,826명) 다수, 입소기간은 평균 24.3년, 대부분 약물상시복용(5,785명)
 - (종사자 현황) 전체 5,143명 중 여성 종사자 다수(3,122명), 돌봄인력은 생활지도원(3,699명)가 많으며, 평균 연령 45.3세, 근무기간 평균 8.5년
- ② (학대예방활동)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지킴이단 구성·운영은 대부분 최소기준을 충족하나, 외부 전문가 활용저조, 신속한 보고 미흡
 - * (기준)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(5~11인 구성, 분기별 1회 운영)
 - (인권상황점검) 입소 장애인 인권상황점검은 운영기준(연 12회)을 충족하여 평균 13.6회 실시하였으나, 일부 기관은 미실시
 - * (기준) 인권상황 점검 이후 시군구 보고, 2022~2024년(3년간) 평균 61.1%
 - (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) 대부분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가 없었으며, 일부 시설에서 의심사례 확인 후 신고·고발 등의 조치 경험(35개소, 50회)
- ③ (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면담) 총 1,354명, 입소 장애인 705명 및 종사자 649명
 - 대부분 긍정적 응답이나, 일부 점검항목에 대해 부정적 응답
 - * (입소 장애인 부정적 응답) 지역사회 생활지원(69명), 전화사용(43명), 금전 사용 및 관리(41명)
 - 입소 장애인 중 신체적 학대, 노동착취 및 성적 수치심 등에 일부 학대 경험 응답

붙임 2

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비전 |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 | |
| 목표 | 입소 장애인 사생활 보호 및 맞춤형 개별서비스 강화 돌봄인력 처우개선 및 장애인 인식개선 강화 | |
| 추진방향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장애인 학대 사후조치에서 인권보호 및 예방중심으로 전환 ② 입소 장애인 사생활 보호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③ 돌봄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 확충 ④ 학대 사후 대응 및 지원강화 ⑤ 인권강화 지원체계 및 사회인식개선 | |
| 구분 | 현행 | 개선 |
| ①사건예방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권교육 인터넷·내부 우주 운영 ■ 인권지킴이단 구성·운영 미흡 ■ 인권담당자 부재 ■ 내부 감사체계 및 인권점검표 미흡 ■ 자율적인 CCTV 설치·운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권교육대면·외부 전문가참여확대 ■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■ 인권담당자 지정·운영 ■ 내부 감사체계 강화 및 인권점검표 가편 ■ 거주시설 CCTV 설치 의무화 |
| ②입소 장애인 인권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집단 대규모 거주시설 ■ 입소 장애인 생활관 환경 미흡 ■ 집단 프로그램 위주 운영 ■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도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독립형 소규모 거주시설 ■ 입소 장애인 생활관 환경개선 (다인실 → 1~2인실 전환) ■ 지역사회 연계 및 개별서비스 강화 ■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확대 |
| ③돌봄인력 지원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돌봄인력 처우개선 부족 (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96.1% 수준) ■ 돌봄인력 부족 (생활재활교사, 간호사 조리원 부족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돌봄인력 처우개선 향상 (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100% 달성) ■ 돌봄인력 확충 (생활재활교사, 간호사 조리원 확충) |
| ④학대 사후대응 및 지원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조사 우주 ■ 초기대응 및 피해자 지원 한계 ■ 인권침해 위반사실 공표 미흡 ■ 피해자 지역사회 자립지원 연계 부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육홍보 등 예방기능 강화 ■ 신속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(권익옹호기관 인력 확충 및 학대 피해쉼터 기능 강화 등) ■ 인권침해 위반사실 공표 강화 ■ 피해자 지역사회 자립지원 연계 강화 |
| ⑤인권강화 지원체계 및 사회인식개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장애인학대 인식 및 감수성 부족 ■ 신고의무자 교육 형식적 운영 ■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부재 ■ 인권실태조사 법적근거 부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장애인학대예방의 날 지정 ■ 신고의무자 교육 실효성 제고 ■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마련 ■ 인권실태조사 법적근거 마련 |

□ 추진배경

- 최근 울산지역 장애인 학대 사건 계기로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학대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

□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

① (사전예방)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

- <개선> 대면교육 및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 인권교육 강화
- <개선> 외부단원 및 모니터링 강화 운영주체 전환 검토 등 인권자감이단 운영 내실화
- <신설> 거주시설 인권예방활동 및 학대신고 등 인권담당자 지정·운영
- <신설> 거실·복도 등 공용공간 위주로 거주시설 CCTV 설치·운영 의무화 도입 검토

② (입소 장애인 인권) 사생활 보호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

- <신설> 지역사회 아파트, 빌라 등 공동주택을 활용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지정·운영을 통해 대규모 거주시설 소규모화 추진
- <개선> 기존 대규모 거주시설 생활관 환경개선(다인실→1~2인실)
- <개선> 교육·문화 등 입소 장애인 개별서비스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확대
- <개선> 무연고 입소 발달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홍보 강화
- <개선>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사업 확대

③ (돌봄인력 지원) 돌봄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 확충

- <개선>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 인건비 개선을 통해 거주시설 돌봄
- <개선> 24시간 365일 시설운영 및 입소 장애인 고령화·중증화 등에 따라 돌봄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기준 개편

④ (학대 대응 및 지원체계) 초기대응, 사후지원 및 자립지원 등 강화

- <개선>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확충을 통한 신속한 초기대응 및 교육·홍보 등 실질적인 학대예방 역할 강화
- <개선> 피해장애인(아동)쉼터 기능 보강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학대피해쉼터 기능과 역할 제고
- <신설> 성폭력·장애인학대범죄 등 인권침해로 행정처분 받은 거주시설의 위반사실 명단 공표 강화
- <개선> 시설 퇴소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자립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서비스 연계 강화

⑤ (인권강화 지원체계 및 사회인식개선) 장애 감수성 제고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, 인권실태조사 법적근거 마련

- <신설>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(6.22.) 지정 및 홍보·행사 등으로 국민인식 제고,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등을 통한 실효성 확보
- <신설> 장애인 인권보호, 학대예방을 위한 장애인학대 보도 권고 기준 마련 및 이행확산 추진('23.5월 장애인복지법 개정)
- <신설>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법적근거 마련,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

< 권고기준 마련 추진방향 >

- 단순히 장애(또는 장애인)에 대한 표현상 부적절성 지적*이 아닌,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**장애인 학대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둔 기준 수립** (* 예. 정상인 → 비장애인)
- 언론의 사회고발이라는 순기능에 앞서 언론의 **장애인 권익 보호에 대한 책임 등 권고기준 수립의 취지**를 나타내는 **전문(前文)** 마련

< 권고기준 요약 >

| 기준 | 세부 지침 |
|---|--|
| <p>① 제2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모방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방안·대안 제시 ▸ 신고방법(신고 전화번호 등) 안내 ※ (학대예방 권고문) 장애인에게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언어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, 경제적 착취, 유기 또는 방임을 하면 학대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, 형법, 성폭력처벌법, 아동학대처벌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1644-8295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. ▸ 피해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묘사하지 말 것 |
| <p>② 피해자나 가해자 정보에 각별한 주의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피해자 및 가해자의 개인정보(주소, 나이, 이름, 사진, 동영상) 보호 ▸ 지역명 및 사건과 관련된 세부정보 제한 |
| <p>③ 관련성 없는 자료화면 반복 노출 유의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관계없는 사건의 CCTV 등 자료화면의 재생 지양 ▸ 장애를 극대화하는 촬영 지양 |
| <p>④ 제목 및 헤드라인에 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표현 있는지 확인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제목 및 헤드라인에 자극적, 반복적, 묘사적 표현 지양 ▸ 제목 및 헤드라인에 법적으로 규정된 객관적 용어 사용 ▸ 선정적인 기사 타이틀 지양 |
| <p>⑤ 가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 사실 강조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 보도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보도를 위해 노력 ▸ 범죄나 사건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를 최소 범위 언급 ▸ 장애인 전체를 모욕할 수 있는 용어 피할 것 |

< 언론 모니터링 >

-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(장애인인권포럼)을 통한 언론 모니터링 - 10대 신문(지면 및 인터넷) 및 미디어 대상, **'24.1~10월까지 582건**